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철승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를 지원하는 등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1.10.19 공포, '22.4.20 시행)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다양한 형태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여성기업 주간 지정, 여성기업 주간 행사 내용 및 지원 근거(안 제8조의2 신설)
 -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, 관련 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나.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(안 제2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'21.12.20. ~ '22.1.28.)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협동조합(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여성기업 주간)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은 매년 7월의 첫째 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포상 및 홍보
2. 여성기업 관련 기념행사
3. 그 밖에 여성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여성기업의 정의) ①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”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	제2조(여성기업의 정의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(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	3. ----- -----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가. ~ 라. (생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8조의2(여성기업 주간)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은 매년 7월의 첫째 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 1.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. 여성기업 관련 기념행사 3. 그 밖에 여성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	
연 락 처	044-204-7431